

제 823 호
1981. 2. 7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편집: 문화정보관 박 종 우
전화 75-3834
인쇄: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래

◎ 조례	
제 1488 호 : 서울특별시립도시관설치조례개정조례	3
제 1489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	3
◎ 규칙	
제 1889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	7
◎ 고시	
제 24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변경(기간연기)	14
제 25 호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지침승인	14
제 26 호 :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지정고시	15
제 27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기간연기승인	15
제 28 호 : 청계천 7가구역제 3.5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 (기간분장) 고시	16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 울 특 별 시

◎ 공 고

제 31 호 :	도시계획사업 (양화교 - 칼산간도로 정비공사) 시행인가설지 계획 공람광고 16
제 33 호 :	화양주 가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청 산금 낸 입고자세 공시 송달 ... 20
제 35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공람광고 30
제 35 호 (동대문구광고) :	지적공부복구 33
제 49 호 (영등포구광고) :	공인분실 및 신조광고 34

◎ 주 템

◎ 주석 통지서

◎ 정

조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1. 2.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이 창간권

◎ 서울특별시 조례 제 1488 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

조례증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설치조례등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명 칭	위 치
종로도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산 1 번지 9 호
남산도서관	" 용산구 후암동 30 번지 84 호
동대문도서관	" 동대문구 신설동 109 번지 4 호
영등포도서관	" 영등포구 영등포동 8 가 121 번지 25 호
청독도서관	" 종로구 화동 1 번지
어린이도서관	" 종로구 사직동 1 번지 27 호
마포도서관	" 마포구 아현동 602 번지 1 호
용산도서관	" 용산구 후암동 30 번지 90 호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나영수권

1981.2.7

◎ 서울특별시 조례 제 1489 호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설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서울특별시지하철도사업에 관한 기구설치조례</p> <p>제 1 장 총 칙</p> <p>제 1 조 (설치) 서울특별시장은 지하철 도건설촉진법제 1 조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하에 서울특별 시의 지하철도(이하 "지하철"이라 한다) 건설을 위한 서울특별시 지하 철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 를 두고 서울특별시의 지하철 운영 을 위한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 소(이하 "운영사업소"라 한다)를 둔다.</p> <p>제 2 조 (위치) 건설본부 및 운영사업 소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p> <p>제 3 조 (공무원의 정원) 건설본부 및 운영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p> <p>제 2 장 건설본부</p> <p>제 4 조 (본부장) ①건설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은 지방이사관, 지방공업기감, 지방시설기감 또는 지 방부이사관, 지방공업부기감, 지방시설 부기감으로 보한다. ②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건설 본부의 업무를 통괄이며 소속공무원</p>	<p>을 지휘 감독한다.</p> <p>제 5 조 (차장) ①건설본부장 밑에 차장 1인을 두고 차장은 지방부이 사관 지방공업부기감 또는 지방시 설부기감으로 보한다. ②차장은 지하철 건설 업무에 관 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p> <p>제 6 조 (하부조직) ①차장 밑에 세무 과, 기획조사과, 건설 1과, 건설 2과 공무과 및 전기과를 둔다. ②서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 조사과, 건설 1과 및 건설 2과장은 지방토목기정으로, 공무과장은 지방 토목기정 또는 지방건축기정으로, 전기과장은 지방공업기정으로 보한다. ③서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자금관리 4. 자재 및 재산관리 5. 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④기획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하철건설 기본계획 및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하철건설 설계 및 심사 3. 민자건설업체의 지도감독</p>
--	---

<p>4. 지하철건설 기술 업무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p>	<p>②업무과장 및 운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토목기장 또는 지방건축기장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공업기장으로 보한다.</p>
<p>⑤건설 1과, 건설 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건설 1과, 건설 2과의 분장 사무의 구분은 지역별로, 본부장이 지정한다.</p>	<p>③업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지하철건설공사시공 및 감독</p>	<p>1. 서무,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p>
<p>2. 수탁공사에 관한 사항</p>	<p>2. 예산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p>
<p>3. 소관 자재의 현장관리</p>	<p>3. 회계 및 재물관리</p>
<p>⑥공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4. 자재창고의 지도감독</p>
<p>1. 지하철궤도(노선)의 시공 및 감독</p>	<p>5. 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지하철 전축물의 시공 및 감독</p>	<p>④운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⑦전기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역무의 지도감독 및 운영</p>
<p>1. 수전, 신호 및 통신설비의 시공 및 감독</p>	<p>2. 승차권 및 요금관리</p>
<p>2. 송, 배전 시설에 관한 사항</p>	<p>3. 전동차의 운행관리</p>
<p>제 3 장 운영사업소</p>	<p>⑤시설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제 7 조 (소장) ①운영사업소에 소장</p>	<p>1. 궤도관리보수 및 공무소의 지도감독</p>
<p>1. 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부이사관, 지방공업부기감, 지방시설부기감으로 보한다.</p>	<p>2. 건축 및 토목구조물 관리 보수</p>
<p>②소장은 지장의 명을 받아 지하철 운영사업소의 업무를 통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p>	<p>3. 차량운작의 설계 및 시공감독</p>
<p>제 8 조 (부부조직) 운영사업소장 밑에 업무과, 운수과, 시설관리과 및 안전관리과를 둔다.</p>	<p>4. 기타 부대시설물 유지관리</p>
<p>⑥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전기설비의 보수 및 유지관리</p>
<p>2. 신호 통신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p>	<p>2. 전동차의 수급 수선검사 및 안전관리</p>
<p>3. 전동차의 수급 수선검사 및 안전관리</p>	<p>4. 소관현업기관의 지도감독</p>

제 9 조 (현업기관) 운영사업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하철 운영 사업소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역과 사무소 기타 필요한 현업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 10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에서 수행하던 업무중 지하철 건설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철본부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며, 지하철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 사업소에서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 산하 현업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현업기관으로 본다.

④ (승원의 예의조치) 본 조에서 정한 2급율류 공무원 1명 (차장)과 3급감류 공무원 2명 (과장)은 서울특별시 지방 공무원 정원을 초정, 시행 할 때까지 서울특별시 지방 공무원 전체 정원 범위내에서 운영한다.

<별표 1> 지하철건설본부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급별	정원	정원 내 풍
2 급	1	행정, 공업 및 시설자 1
3급감류	6	행정직 1, 토목직 3, 토목및건축직 1, -공업직 1
3급율류	23	행정직 5, 토목직 11, 건축직 2, 전기직 3, 기계또는전기직 1, 통신직 1
4급감류	74	행정직 13, 토목직 45, 건축직 5, 기계직 1, 전기직 8, 통신직 2
4급율류	74	행정직 12, 토목직 44, 건축직 6, 기계직 3, 전기직 8, 통신직 1
5급감류	46	행정직 3, 토목직 41, 기계직 2
5급율류	4	토목직 4
고용원	32	수워장 1, 수워 2, 운전원 7, 전공 1, 사진사 1, 제도사 1, 타자원 3, 대장경리원 6, 청부 2, 전달부 1, 경비원 4
합계	260	

제 823 호 시 보 1981.2.7 35-7

<별표 2> 지하철운영사업소지방공무원정원표

직급별	정원	정 원 내 용
2급율류	1	행정통업 및 시설직 1
3급감류	2	행정직 1, 풍업직 1
3급율류	12	행정직 5, 토목직 1, 건축직 1, 전기직 1, 기계직 3, 통신직 1
4급감류	38	행정직 13, 토목직 3, 건축직 1, 기계직 7, 전기직 9, 통신직 5
4급율류	30	행정직 9, 토목직 3, 건축직 3, 기계직 5, 전기직 5, 통신직 5
5급감류	9	행정직 5, 토목직 2, 전기직 1, 통신직 1
기 능 직	1,367	5등급: 철도현업 20, 6등급: 철도현업 108 7등급: * 213 3등급: * 367 9등급: * 362 10등급: * 290
고 용 원	234	운전원 6, 전공 12, 사진사 1, 수위장 1, 수위 2, 계도사 1, 목공 1, 타자원 4, 경비원 15, 대장정리원 8, 경우 2, 전달 부 1, 안내원 34, 선로수 17, 경리수 53, 여객수 70, 보안수 2 통신수 4
합 계	1,693	

규 칙

서울특별시지하철사업에
관한 사무 분장규칙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사무분장규칙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1981년 2월 7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889호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사무분장규칙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사무분장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
시 지하철 건설본부(이하 "건설본
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지하
철운영사업소(이하 "운영사업소"
라 한다)의 파·제의 분장사무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건설본부
제 2 조(서무파) ① 서무파에 서무 제
기획처, 경리처 및 관제처를 두고

36-8 제 823 호 시

보 1981.2.7

<p>제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p>	<p>나. 광고에 관한 업무 다. 예산과목, 회계실사 및 지출 원인 행위</p>
<p>②서무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라. 공사의 도급, 물품 차재 및 기타 상역외 계약 업무 나. 물품 검수 및 공사 검사에 따른 입회</p>
<p>1. 서무제</p>	<p>바. 세입, 세출의 현금 및 유가 증권의 출납보관</p>
<p>가. 보안업무, 청사관리 및 당숙 직</p>	<p>4. 관재제</p>
<p>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후생에 관한 사항</p>	<p>가. 지하철건설 자재의 수급 계획 및 출납보관</p>
<p>다. 문서, 편안, 환수와 의견 행사 및 공보</p>	<p>나. 자산의 취득 및 관리처분 다. 건설용 자재물품의 규격 제정에 관한 사항</p>
<p>라. 업무용 차량관리</p>	<p>라. 자산의 수용 및 보상</p>
<p>마. 자체 감사</p>	<p>마. 회전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p>
<p>바. 본부내 타과, 과내 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제 3조 (기획조사과) ①기획조사과에 기획조정제, 제획설제제 및 지도제를 두고 기획조정제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제획설제제장 및 지도제장은 지방로목기과로 보한다.</p>
<p>2. 기획제</p>	<p>②기획조사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가. 지하철건설 기획 업무의 종합 조정</p>	<p>1. 기획조정제</p>
<p>나. 기본 운영 계획의 수립 조정 및 심사분석</p>	<p>가. 민자로 건설하는 지하철건설의 행정 업무</p>
<p>다. 세입, 세출 예산의 편성 및 충월 조정</p>	<p>나. 서울 지하철주식회사의 행정</p>
<p>라. 지하철건설의 홍보</p>	
<p>마. 지하철건설에 따른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p>	
<p>3. 경리제</p>	
<p>가. 지하철 건설 예산의 지출 충월 및 결산</p>	

<p>지원 및 운영의 지도감독 다. 민자로 건설하는 지하철 건설의 차관에 관한 업무 라. 기타 타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②건설 1과, 건설 2과의 제별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고 각자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각과 공사 1과에서 관찰하며, 각자별 분장 사무는 공사 구역별로 본부장이 정한다.</p>
<p>2. 제회설제계 가. 지하철 건설의 기본 제회 및 보상업무 (민자건설포함) 나. 지하철 건설에 따른 제기준, 규정의 재정 및 조정 다. 지하철 건설 공사의 도록 구조물의 기본 설계 및 심사 라. 지하철 건설의 물동 제회과 공사 진도 파악 및 종합조정 마. 지하철 건설에 관련된 수탁 공사의 종합 조정과 협의에 관한 업무</p>	<p>1. 공사 1과, 공사 2과, 공사 3과, 공사 4과 가. 소관분담 지역의 지하철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나. 소관 수탁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독 다. 소관공사에 따른 물품 제회 및 자재 수급 관리 라. 소관공사와 관련된 배상, 보상 및 기타 민원처리 마. 자재의 현장 관리</p>
<p>3. 지도책 가. 민자로 건설하는 지하철 공사의 기술 지도 감독 나. 민자로 건설하는 지하철 공사의 설계 및 준공의 확인 다. 민자로 건설하는 지하철 공사의 진도 파악, 조정 및 기록 정비</p>	<p>제 5조 (공무과) ①공무과에 선로 제건축 1과 및 건축 2과를 두고, 선로책장은 지방토목기과로, 건축 1책장 및 건축 2책장은 지방건축기과로 보한다. ②공무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건축 1과와 건축 2과의 분장 사무는 공사구역별로 본부장이 정한다.</p>
<p>제 4조 (건설 1, 2과) ①건설 1과와, 건설 2과에 각각 공사 1과, 공사 2과, 공사 3과 및 공사 4과를 두고, 책장은 지방토목기과로 보한다.</p>	<p>1. 선로책 가. 지하철 제도 건설의 설계, 시공 및 감독</p>

36-10 제823호 시

부 1981.2.7

<p>나. 케도 재료의 규격에 관한 사항</p> <p>다. 소관용품의 수급에 관한 사항</p> <p>라. 소관 사항에 따른 예산의 종합조정, 조사 및 배상</p> <p>마. 과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건축 1회, 건축 2회</p> <p>가. 지하철 정기창내부 및 부대 건축물 설치 시공 및 감독</p> <p>나. 지하철 구내의 위생, 급수 및 소방설비의 설치 시공 및 감독</p> <p>다. 지하철 건설본부의 기타 업무</p> <p>라. 소관 현장 관리 업무</p> <p>제 6 조 (전기과) ①전기과에 전무제, 전력제, 신호제, 통신제 및 시설제를 두고 전무제장, 전력제장, 및 신호제장은 지방전기기과로, 통신제장은 지방통신기과로, 시설제장은 지방기계기과 또는 지방 전기기과로 보한다.</p> <p>②전기과의 제별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p> <p>1. 전무제</p>	<p>가. 지하철 건설에 따른 전기 관제 업무의 종합조정</p> <p>나. 변전 시설의 계획, 설치 시공 및 감독</p> <p>다. 소관용품의 규격 및 수급 조정</p> <p>라. 전기관제 해외 풍역</p> <p>마. 과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전력제</p> <p>가. 지하철 건설에 따른 송·배전 시설, 계획 설치 시공 및 감독</p> <p>나. 전선로의 계획, 설치, 시공 및 감독 검사</p> <p>다. 소관용품의 규격, 수급조정에 관한 사항</p> <p>3. 신호제</p> <p>가. 지하철 신호 설비의 계획, 설치 시공 및 감독</p> <p>나. 소관용품의 규격, 수급조정에 관한 사항</p> <p>다. 소관 시설물의 검사</p> <p>4. 통신제</p> <p>가. 지하철 통신설비의 계획, 설치 시공 및 감독</p> <p>나. 소관용품의 규격, 수급 조정에 관한 사항</p> <p>다. 소관시설물의 검사</p>
---	---

<p>5. 시설제</p> <p>가. 조명, 휘기, 냉난방, 기타부대 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독</p> <p>나. 소관용품의 규격, 수급조정 및 현장관리</p> <p>제 7 조 (직무대행) ①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본부장과 차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3 강 운영 사업소</p> <p>제 8 조 (업무과) ①업무과에 서무제, 기획예산제 및 재무제를 두고 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p>②업무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자호와 같다.</p> <p>1. 서무제</p> <p>가. 보안업무 및 청사관리</p> <p>나.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 급여, 교육훈련 및 후생에 관한 사항</p> <p>다. 문서, 관인 관수와 의견 행사 및 공보</p> <p>라. 업무용 차량관리</p> <p>마. 자체감사, 복무, 당숙직업무</p> <p>바. 기타사업소내타과, 과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재회예산제</p> <p>가. 기획업무의 종합조정</p> <p>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조정 및 성사분석</p>	<p>다. 세입, 세출 예산안의 작성 및 충찰조성</p> <p>라. 예산배정 및 재정활의에 관한 사항</p> <p>마. 경영관리 평가 및 경영 통계 발간</p> <p>바. 기타 지하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p> <p>3. 재무제</p> <p>가. 사업예산 지출의 충찰 및 결산</p> <p>나. 사업의 원가 계산 및 경영 분석</p> <p>다. 세입, 세출의 현금과 유가 증권의 관리</p> <p>라. 사업용 자재의 수급계획 및 출납보관</p> <p>마. 고정자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p> <p>바. 자산의 수용 및 보상</p> <p>사. 자재창고업무 운영 및 지도 감독</p> <p>아. 기타 회계 및 관재에 관한 사항</p> <p>제 9 조 (운수과) ①운수과에 운수제, 심사제 및 운선제를 두고, 운수제장 및 심사제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p>
--	--

36-12 제 823 호 시

보 1981.2.7

<p>② 운수과의 제별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운수계 가. 여객수송계획 및 소관 예산의 종합조정 나. 영업수지 예산과 경영분석 다. 운수업무의 종합조성 라. 역무의 지도 감독과 운영 및 역사관리 마. 광고 및 영업선전 바. 여객영업사고방지 및 처리 사. 지하철관리 규정 및 지하철 흥보</p> <p>2. 심사처 가. 승차권 및 요금관리 나. 여객운수 영업에 관한 심사 및 통계 다. 타운수 기관과의 협력 운수 및 정산 라. 운수 세입금의 징수 및 총괄</p> <p>3. 운전계 가. 전동차 운행 및 안전관리 나. 타운전 기관과의 협력협조 다. 운전 사령실 승무관리소의 운영 및 지도감독 라. 기타 전동차 운전에 관한 사항</p> <p>제 10 조 (시설관리과) ① 시설관리과에 보선계, 영선계 및 설비계를 두고 보선계장은 지방도록기자로,</p>	<p>영선제장은 지방건축기자로, 설비제장은 지방기제기자로 보한다. ② 시설관리과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보선계 가. 지하철구도의 유지관리 및 보수 나. 궤도 사고방지 및 처리 다. 공무소 업무의 지도 감독 라. 지하철 토목 구조물의 유지 관리 및 보수 마. 기타 지하철 운영 사업소내 토목업무에 관한 사항 바. 과내 타재에 속하지 않은 사항</p> <p>2. 영선계 가. 지하철 정거장 내부 및 부대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나. 기타 지하철 운영 사업소의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p> <p>3. 설비계 가. 위생, 급수,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및 보수 나. 기타부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사항</p> <p>제 11 조 (안전관리과) ① 안전관리과에 전차계, 전기계 및 신호통신계를 두고 전차계장은 지방기제기자로, 전기계장은 지방전기기자로, 신호통신계장은 지방통신기자로 보한다.</p>
--	---

<p>(2) 안전관리과의 제별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천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동차 수급 계획 및 유지 관리 나. 전동차 및 점수차용품의 규격 및 국산화 추진 다. 전동차의 점검, 주선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라. 차량 공작소의 운영 및 지도 감독 마. 기타 천동차 안전에 관한 사항 바. 과내 타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2. 전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하철 전기관계 업무의 총괄 조정 나. 전기 시설의 유지 관리 및 보수 다. 전력 사령실, 전기소 업무의 운영 및 지도 감독 라. 송배전시설, 조명, 환기, 냉난방 및 기타 부대 시설의 유지 관리 및 보수 마. 과내 타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p>3. 신호통신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호통신 시설의 유지 관리 및 보수 나. 소관 시설물의 안전 관리 다. 통신소, 신호 보안소의 운영 및 지도감독 마. 기타 신호 및 통신 업무의 종합 조정 <p>제12조 (직무대행) 운영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운영 사업소장과 업무과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수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부 칙</p> <p>(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2)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내전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 산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 후 별도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근무한다. 다만, 현 업무관에 근무하는 기능적 공무원과 고용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p>
---	--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변경(기간연기)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91 호
(79. 2. 28)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한 지역에 대
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건
설부고시 제 463 호(79. 12. 10)
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
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1년 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도곡동
109 번지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
업(학교) 시행역삼(대도) 국민
학교
-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 특
별시 교육위원회
-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년월일 : 1979. 3

당초준공예정일 : 1980. 12. 30

변경준공예정일 : 1981. 6. 30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
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생략)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생략)

사. 사업의 규모(면적) : 14,635
(4,427 평)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 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여객자
동차정류장)을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통법 제 13 조와 천설부고시
제 463 호(79. 12. 10) 관련부임 사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통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1. 2. 3

서 울 특 별 시 장

제 823 호

시

보

1981.2.7

36-15

○ 시설조례

구분	시 설 명	위 치	지 면	비 고
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성동구 구의동 구의매립지	30,300	시외버스

*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6 호

서울특별시지방문화재지정고시

문화재 보호법 제 54 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6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를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7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1.2.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지정목록

별	지정번호	경 칭	면적	소 재 지	소 유 자
지방유형문화재	제48호	광명대군묘	125,237 ¹⁶ 평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주이씨 장의수서동 산 10-1, 6, 8, 9	장의수서동 꼭파 종종

1981.2.6

○ 서울특별시고시제 2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기간연기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0호(75.11.24) 및 동 고시 제366호(79.8.16)로 실시 계획인가 및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사업(학교: 서울대학교)에 대한 사업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기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의 211 일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 서울대학교)
다. 시행면적 및 규모: 3,542.907 m²(1,073,608 평)
라. 사업시행자: 서울대학교 총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 75.11.29
2) 준공예정일: 85.12.31

36-16 제823호 시

보 1981.2.7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8호

청계천7 가구역 제3,5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변경(기간연장)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86호(78.3.
9)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된 청계천
7 가구역 제3,5지구에 대하여 재

개발사업시행인가변경(기간연장)을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2항 및
제8조(권한위임)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였기 둘법 제16조 제1항
에 의거 더·파·같이 고시한다.

1981.2.6

서울특별시장

청계천7 가구역 재개발사업시행계획변경(기간연장)

구 분		제 3,5 지 구
재 개발사업명칭	청계천7 가구역 제3,5지구 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및 면적	중구 신당동217-39 일대	1,240.2 평
주된 사무소 소재지	중구 신당동217-39	
시행기간	변경전	1978.3.9~1980.12.31
	변경후	1978.3.9~1981.4.30
시행인가 년월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86호(78.3.9)	사업시행인가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217-67 청계천7 가구역 제3,5지구 재개발조합 조합장 김한주	
비 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9호(79.2.17) 등고시 제41호(80.2.11) 및 등고시 제282호(80.8.6) 로 사업시행인가 계획변경(기간연장)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31조

도시계획사업(양화교~찰산간도로정
비공사) 시행인가 및 시계획공람공고

1. 전설부 고시 제198호(71.4.7)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5호(71.
11.10)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된(양화교~찰산간 도로정비공사현업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인가제작
(시행인가)를 수립하고자 도시계획
법 제25조2 규정에 의거 공고일

제 823 호 시

보 1981.2.7 36-17

로부터 14일간 일반의 풍랑에
공한다.

2. 본래 도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토목과와 견설관리과에 각각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2.4

서울특별시장

(공람개고)

3.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목동 119번지 4의 66평지

2. 사업의 종류 명칭: 도시계획사

업 (양화교 - 활산간 도로정비
공사)3. 사업의 규모: = 7 m = 5,421 m
= 364.7 a

4. 사업시행자: 강서구청

5.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차수예정일: 81.2.20

나. 준공예정일: 81.9.10

6. 사용 또는 수용할 농지: 조사
참조7.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소 성
명: 조서 참조

토 지 조 서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목동	119-4	전	1,706	강남구 논현동 230-6	김상식
	122-1	답	998	효자동 172-1	강인석
	121-1	▪	516	공덕동 175-124	최규일
	121-2	▪	562	이태원동 271	김여운
	119-2	전	1,299	동선동 5가 172	이창희 외 2명
	135-1	▪	76	동작동 307 의 3	김희제
	135-5	▪	40	반포아파트 84동 104호	▪

26-18 제823호 시 보 (1981.2.7)

등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근동	136-10	전	1,022	반포아파트 86동 104호	침희제
"	136-2	"	152	"	"
"	137-7	"	122	"	"
"	136-3	"	175	"	"
"	137-8	"	625	"	"
"	137-5	"	155	"	"
"	138-18	"	169	"	"
"	143-23	"	56	목동 223	문덕천
"	137-6	"	23	동작동 307-3	김희제
"	138-17	"	17	반포아파트 86동 104	"
"	413	도로	80		국
"	136-7	임야	231		비도번
"	137-19	구거	747	목동 264-3	양동농지재량조합
"	137-23	하천	423		서울시
"	143-2	구거	198		조선총독부
"	143-26	하천	126		"
"	143-27	"	76		국
"	143-24	제방	1,544		"
"	143-10	"	334		"
"	144-7	"	195		"
"	144-2	"	255		"
"	412	도로	734		"
"	145-2	제방	723		"
"	414	하천	10,529		"
"	151-2	제방	3,217		"

제 823 호

시

보 1981.2.7 36-1

동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	소	성
목동	152-2	제방	820			국
"	153-2	"	876			"
"	154-2	"	1,246			"
"	155-2	"	2,585			"
"	156-2	"	1,765			"
"	160	"	3,094			"
"	162-2	"	1,617			"
"	172-2	"	4,215			"
"	409-3	"	57,455			"
"	-1	구거	18,268			"
"	409-188	잡종지	11,580			"
"	68	제방	31,537			"
"	40	"	172			"
"	189	담	46			비도번
"	67	잡종지				국
"	25	구거	774			"
"	432	도로	5,484			국
신정동	137-2	제방	4,288	목동 264-3	양동농지개량조합	"
"	-3	"	20,559			"
"	-4	"	519			"
"	138-2	"	3,461			"
"	842	도로	32,430	목동 264-3	양동농지개량조합	"
"	140-2	제방	5,878			"
"	141-3	"	6,435			"
"	147-3	"	8,030			국

36-20				제 823 호	시	보	1981.2.7
등명	시 번	면적	면적	주 소	소 유	자	성 명
신경동	148-2	세 방	9,642	목동 264-3		양동농지개량조합	
"	149-4	"	1,412			국	
"	841	"				"	
"	149-9	"	6,737			"	
"	154-2	"	3,560	목동 264-3		양동농지개량조합	
"	153-2	"	3,220			"	
"	152-4	"	5,550			"	
"	152-6	구 기	1,706			"	
"	153-4	"	982			"	
"	136-17	전	3			"	

건 물 조 서							
등명	시 번	면적	구 소	주 소	소 유	자	성 명
목동	409-68	8.5 평	세멘트러와기	목동 409-68		이 성 내	
"	409-68	11 평	"			이 성 재	

(o) 시 윤무별시공고제 33호

화양우기로지구의 정리사업지구
정산금납입고지서 공시송달

80.12.29 자로 납입고지한 화양
우기원지락정지구내 정산금납입고지
서류 납부외부자에게 송달한 바

수령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명등으로
송달이 불능함으로 지방세법 제52조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한다.

1981.2.

서 울 류 별 시 장

수납 번호	총 전 토 지			권적 면적	환 지 토 지			증 정	청 산 금 체 납 액	남 부 자 주 소	현 재 성 명	19 현재				
	동명	지번	평수		동명	지번	평수					제 823 호	시	보	1981.2.7	36-21
21	자양동	307-9		20	자양동	584-2	22.4	2.6	442,000	연남동 364-25	송완규					
39	"	304-21		61.6	"	585-18	62.7	1.1	374,000	자양동 304-4	장용남					
45	"	448-35		12.5	"	586-8	25.4	12.9	3,354,000	화양동 10	김동규 여태					
62	"	437-6		350.2	"	588-12	350.6	0.4	94,285	자양동 437-6	이광우					
70	"	443-2		45.5	"	589	48.5	3.0	1,080,000	자양동 399-5	최광웅					
73	"	436-6		62	"	589-17	62.5	7.5	90,000	자양동 437-18	서병길					
110	"	371-16		37.5	"	595-22	37.9	0.4	120,000	잠실동 61-45	김생구					
129	"	신39-27		40	"	598-4	45.3	5.3	1,749,000	자양동 598-4	김광식					
132	"	신39-21		35.6	"	598-18	35.9	0.3	90,000	용답동 10-25	남궁성복					
146	"	360-5		14.8	"	599-18	15.1	0.3	57,000	자양동 472-12	홍천수					
154	"	391-1		73.2	"	599-33	73.7	0.5	95,000	자양동 399-2	신현광					
165	"	389-1		72.4	"	600-19	73.2	0.8	152,000	"	신현광					
166	"	389		37.8	"	600-20	37.9	0.1	30,000	"	신현광					
174	"	307		35	"	601-11	36.6	1.6	448,000	금호동 2가산 14	김춘배					
177	"	307-2		20.7	"	601-17	21.1	0.4	76,000	연남동 364-25	속찬규					
189	"	122-22		47.1	"	604-4	47.8	0.7	238,000	자양동 122-228	김종일					
212	"	104-17		48.5	"	605-21	49.3	0.8	240,000	자양동 104-17	이경호					
215	"	104-26		82.6	"	605-32	84.1	1.5	315,000	자곡동 353-18	김주영					
216	"	104-13		86	"	605-35	89.6	3.6	756,000	"	김주영					

36-22

제 823 호

스

1981.2.7

수납 번호	총 계 토 지			권리 면적	화 지 토 지			증 평	청 산 금 체 납 액	납 부 자	
	동 명	지 번	평 수		동 명	지 번	평 수			주 소	성 명
220	자양동	103-22		85.2	자양동	606-13	87.9	2.7	513,000	금호동 2 가 87	조규현
221	"	392- 2		45	"	606-14	45.4	0.4	216,000	자양동 141	김원세
225	"	103-23		44	"	" 27	44.6	0.6	240,000	사직동 91	이수진
254	"	343- 2		39	"	609-13	40	1.0	290,000	천호동 21-71	전기철
255	"	15-35		17.7	"	" 18	17.8	0.1	19,000	화곡동 353-43	정준모
256	"	343- 5		44.8	"	" 20	45.5	0.7	294,000	당산동 3 가 1-606	삼익오형식
264	"	324-76		115.6	"	610- 6	199	83.4	27,522,000	회현동 2 가 75	김옥희
300	"	" 96		0.6	"	" 32	0.7	0.1	20,000	미아동 223-6	김태식
393	"	271-20		40	"	613-15	40.8	0.8	252,000	자양동 142-118	김원경
397	"	328-4의2		274	"	" 31	366.2	92.2	21,206,000	자양동 328-1	이근선
413	"	326-42-1		45.8	"	614-13	46.8	1.0	350,000	동충동 129-224	최성희
488	"	363-13		60.3	"	617-36	61.4	1.1	660,000	성수동 2 가 316-58	이성열
495	"	170- 6		36.3	"	" 45	37.1	0.8	160,000	구의동 57-2	유복영
510	"	" 15		118.9	"	618-43	119.9	1.0	200,000	"	"
564	"	172-38		145.8	"	622- 7	146.5	0.7	210,000	상왕십리 494-2	허용
621	"	193-25		43	"	624-38	44.2	1.2	684,000	황학동 217	정기원
623	"	192-12	(12) 624-18 77-24	0.6	"	" 47	0.7	0.1	20,000	자양동 173-15	배숙기
624	"	" 13	"	0.6	"	" 48	0.7	0.1	20,000	"	"
641	"	173-17	21(사도)	70	"	625-31	72.6	2.6	520,000	동충동 4-8	이원구
642	"	174- 8	"	72.2	"	" 32	72.6	0.4	80,000	구의동 236-42	정봉운
645	"	185- 4	12	136.3	"	627- 3	106.6	0.3	180,000	수유동 391-279	실헉두

수 남 번호	종 전 토 지			권리 면적	환 계 토 지			증 평	청 산 금 체 남 익	남 능 자 주 소 , 성 명	제 823 호
	동 명	지 번	평 수		동 명	지 번	평 수				
648	자양동	185-8	12	32.3	자양동	627-6	32.5	0.2	40,000	수유동 393-27-1 심학두 외 1인	
649	"	"-5	"	106.3	"	"-7	106.7	0.4	252,000	"	
697	"	179-3	22	32.5	"	630-13	33.3	0.8	260,000	자양동 192-1 김덕기	
706	"	151-1	21	61	"	631-3	63.9	2.9	1,160,000	행당동 322-23 손수열	
714	"	산14-5	(30)사도	35.3	"	"-21	35.9	0.6	120,000	인의동 46-6 전호경	
718	"	산14-6	30	40.6	"	"-25	41.3	0.7	227,500	도선동 311 손중용 외 1	
727	"	161-13	"	70	"	632-7	72.7	2.7	540,000	구의동 224-8 이명우	
761	"	367-4	(30)사도	35.3	"	634-22	35.4	0.1	20,000	경운동 17-2 주찬규 외 1	
770	"	167-4	"	42	"	"-39	43.5	1.5	300,000	중립동 220 조기식 외 3	
787	"	107-25	40	40	"	636-16	40.7	0.7	217,000	용두동 223-24 박익하	
788	"	107-1	(40)사도	61	"	"-18	62.1	1.1	220,000	행촌동 20-7 진현권	
791	"	110-2	(637우)50	50	"	637-2	51.3	1.3	455,000	장안동 65-3 총이팡	
795	"	110-4	50	45	"	"-8	47.5	2.5	950,000	자양동 124 이광재	
805	"	305-5	50	37	"	"-22	39.7	2.7	837,000	자양동 239-1 이재중	
815	"	122-25	(50)사도	68	"	638-2	68.2	0.2	40,000	자양동 317 신상철	
817	"	122-36	"	68	"	"-5	68.3	0.3	60,000	"	
818	"	"-37	50	49.2	"	"-1	49.7	0.5	165,000	장안동 221, 222, 223, 224 주한	
819	"	"-47	(51)사도	68	"	"-8	68.3	0.3	60,000	"	
829	"	"-51	51	35	"	"-25	35.9	0.3	270,000	자양동 122-22 김승진	
839	"	368-2	(50)사도	16	"	639-6	16.4	0.4	76,000	자양 100-1 김수원 외 4	
845	"	"-3	"	60.5	"	639-14	67	0.5	75,000	자양 100-1 김수원 외 1	

제 823 호 시 보 1981.2.7 36-23

36-24

제 823 호

지

1981.2.7

수 날 번 호	증 전 토 지			권 리 면적	환 지 토 지			증 평 적	거 산 금 체 납 액	납 부 자 주 소 , 성 명
	동	명	지 번		명 수	동	명			
849	자양	370-9	(사도) 50	66.5	자양	639-23	66.8	0.3	57,000	자양 100-1 김용원 외 4
861	"	398-4	60	49.5	"	640-4	53.1	3.6	1,224,000	동작동 3-9 백현기
864	"	398-10	(사도) 60	66.6	"	640-10	63.8	0.2	38,000	연희동 446-165 민병옥
870	"	395-9	"	66.6	"	640-21	67.2	0.6	114,000	"
874	"	103-8	"	66.6	"	640-29	67.5	0.9	171,000	"
892	"	98-2 의 1	61	194	"	643-22	196.4	2.4	360,000	화양 24-12 김현경 외 4
894	"	97-1	(사도) 67	160.3	"	643-28	161.3	1	150,000	"
900	"	산58-7		84	"	645-6	84.1	0.1	24,000	남가좌 79-27 유재석
921	"	97-5		20	"	646-41	21	1	190,000	자양 69 박순녀
925	"	산54-6		54.2	"	647-2	55.6	1.4	490,000	자양산 54-5 이진정 외 1
934	"	산54-21		45.2	"	647-20	45.5	0.3	87,000	반포동 1-307 과APT 박종명
946	"	101-17		19.5	"	648-7	20.2	0.7	119,000	자양 101-5 박영수 외 6
959	"	103-39		0.6	"	648-33	0.7	0.1	17,000	역삼동 산 77-10 김동옥 외 3
962	"	101-20		21.2	"	649-2	21.3	0.1	18,000	자양 101-5 박영수 외 6
964	"	산52-3		68.6	"	649-6	68.8	0.2	36,000	자양산 52-3 박원환 외 4
965	"	산52-8		35.7	"	649-8	38.6	2.9	1,044,000	자양산 52-8 임병란
1039	"	106-3		0.6	"	651-52	0.7	0.1	18,000	자양 107-17 김성범 외 2
1042	"	119-53		0.3	"	652-17	0.4	0.1	20,000	자양 482-2 권경진
1046	"	119-60		1.1	"	652-26	1.4	0.3	150,000	윤재복
1097	"	산15-3		56.8	"	654-5	57.8	1	270,000	마장동 569-1 최이공
1113	"	153-7		102.30	"	655-25	109.3	7	1,400,000	이남현

수 남 번 호	총 전 토 지			권 리 면 적	환 지 토 지			증 평	청 산 금 액	남 부 자 주 소 , 성 명
	동 명	지 번	평 수		등 명	지 번	평 수			
1141	자양	153-24		25	자양	656-26	25.2	0.2	40,000	이남현
1221	"	산49-31		96.6	"	663-2	104.3	7.7	3,060,070	울지로 6 가 17 김창호
1225	"	79-5		75.5	"	663-7	78.1	2.6	494,000	자양 227-135 김춘동
1227	"	117-9 <small>99-2</small>		36	"	663-14	37.3	1.3	390,000	자양 117-9 유태열
1229	"	117-2		17.2	"	663-16	17.5	0.3	57,000	구의 235-78 강철수외 2
1245	"	83-2		82.4	"	555-7	82.6	0.2	56,000	자양 63-5 임삼철
1246	"	83-2		21.6	"	7-8	21.9	0.3	57,000	자양 83 박준희
1247	"	83-3		50	"	7-9	50.2	0.2	60,000	회현 1 가산 1-2 양준오
1255	"	산30		53.3	"	666-5	55.2	1.9	589,000	자양산 30 이우현
1267	"	산28-2		44	"	7-19	44.9	0.9	280,000	화양 111-28 유오준
1285	"	산38		16.7	"	671-3	27.1	10.4	2,184,000	자양산 38 손봉현
1288	"	산26-6		136.5	"	672	139.6	3.3	759,000	자실동 506-302 잠실 APT <small>죽봉현</small>
1294	"	산22		16.7	"	674-6	28.1	11.4	2,052,000	방배 12-22 이용근
1298	"	127-1		104.80	"	679-1	115.40	10.6	5,724,000	신림동 1-450 이병철
1307	"	141-10		8.3	"	679-15	9.1	0.8	400,000	구의동 222-4 김재철
1361	"	산9-4		30.2	"	681-5	35.2	5	2,250,000	자양산 9-4 박승관
1363	"	139-2		24.5	"	681-9	47.9	13.4	4,020,000	하왕십리 242-157 이의호
1364	"	"-15		3.8	"	681-10	4.4	0.6	120,000	종로동 238-16 김대웅
1371	"	산6-9		11.3	"	681-22	11.5	0.2	40,000	자양산 6-7 유준호
1375	"	29-15		35.3	"	681-33	52.3	1.	5,500,000	남대문 4 가 12-6 서정수
1384	"	25		152.5	"	682-4	157.60	5.1	1,765,000	부암동 205-9 정진열

쪽 823-54

11

1981.2.1

36-1

36-26

제 823 호

서

보

1981.2.7

수 남 번호	총 전 토 지			권리 면적	환 지 토 지			증 명	청 산 금 체 남 액	남 부 자 주 소 , 성 명
	동	명	지번		동	명	지번			
1393	자 양	24-	5	25.8	자 양	682-16	~.7	16.9	4,732,000	자양 10 흥춘포
1402	"	23-	7	0.6	"	682-38	0.7	0.1	20,000	금호동 4 가 211 신현승
1403	"	산10-49		65.4	"	683- 1	65.6	0.2	40,000	이 등 기
1404	"	산10-40		65.4	"	" - 4	65.7	0.3	60,000	"
1407	"	" - 31		65.4	"	" - 7	66	0.6	120,000	"
1465	"	23-	1	17.8	"	685-29	20.5	2.7	702,000	서린동 94 전 주이 씨 외 1
1484	"	산10-149		40.9	"	686-20	42.7	1.8	360,000	정동동 670-4 서재근 외 1
1485	"	" - 144		35	"	686-21	36.9	1.9	627,000	자양 308-144 조항구
1494	"	41-	9	0.6	"	686-53	0.7	0.1	22,000	성수 2 가 236-13 이 후자
1495	"	산10-93		100	"	687	100.6	0.6	210,000	중화동 243-2 이 금예
1501	"	산10-91		101	"	687- 8	101.6	0.6	198,000	수유 486-609 김영석
1578	"	51- ² ^{외 2}		502.6	"	696- 7	503.7	1.1	242,000	영제합명회사
1589	구 의	산64- 6		25.5	구 의	587-20	25.7	0.2	40,000	봉장동 320 이종우
1595	"	산75- 1 ^{외 1}		8.7	"	587-39	24.2	15.5	2,790,000	구의산 75 신두문
1610	"	302- 2		69.6	"	589- 6	90.5	20.9	7,315,000	자양 282 강용학 외 1
1616	"	322- 4		100	"	591- 3	101.1	1.1	407,000	구의 239-81 이영갑
1625	"	323-13		0.6	"	591-26	0.7	0.1	20,000	구의 210-14 손동수
1628	"	산2- 2 ^{외 1}		16.7	"	592- 2	25.3	8.6	2,752,000	구의 326 홍순옥
1676	"	311- 3		172.5	"	598- 1	189.6	17.3	5,536,000	옹암 85-28 박일명 외 2

수 남 번 호	중 간 토 지			권 리 면 적	환 자 토 지			증 평	청 산 금 체 납 액	남 부 자 주 소 , 성 명
	동 경	지 번	명 수		명	지 번	명 수			
1131	자 양	153-17		64	자 양	556-13	64.2	0.2	60,000	자양 153-13 박태우
36	"	467-21		53.7	"	585-14	64.5	0.8	240,000	자양 65 박준여
53	"	445- 1		3.9	"	585-23	29.9	2.6	7,020,000	자양 271-13 윤재우
55	"	437-16		49.2	"	588- 1	50.8	1.6	336,000	모진동 60 지춘복
58	"	407- 5		53.7	"	588- 5	55.2	1.6	448,000	자양 477-7 이규순
68	"	437-25		60.2	"	588- 5	63.5	1.3	286,000	구의동 232-48 윤진용
69	"	407-25		0.6	"	588-28	0.7	0.1	14,000	미동기
71	"	439- 1		70.4	"	589- 4	73.4	3.0	600,000	성수 1가 670-146 안세환
76	"	387- 2		68	"	591-10	68.3	0.3	63,000	자양동 399-2 신현황
107	"	371-129		37.5	"	595-16	38	0.5	145,000	휘경동 139-41 이광호
118	"	367- 1		40.6	"	597- 4	42.7	2.1	798,300	자양농산 14-7 김희원
141	"	386- 4		61.7	"	598-31	52.6	0.9	261,000	상봉동 265-1 배종수
172	"	308- 3		46	"	601- 1	48.7	0.7	210,000	사당동 산 24 이운향
191	"	122- 7		39.7	"	604- 7	40.3	0.6	186,000	자양 122-7 신택수
200	"	104-12		51.8	"	605- 1	52.4	0.6	240,000	신당동 199-9 한정기남
204	"	104-37		53.7	"	605- 6	54.6	0.9	315,000	자양 395-2 황동주
232	"	317- 2		40.3	"	607-10	41.9	1.6	832,000	자양 335-2 최개홍
438	"	산15-38		32	"	615- 7	32.2	0.2	40,000	노량진 294-424 손찬용
503	"	산13-14		35.7	"	618-27	37	1.3	474,500	석관 371-135 채기경
619	"	193-22		43.6	"	624-33	45.3	1.7	925,000	구의 248-135 짐수복
750	"	167- 6		50	"	635-16	50.3	0.3	108,000	자양 661-10 임성섭

제 823 호

서

보

1981.

2.7

36-27

36-28

제 823 호

서

보

1981.2.7

수 번 번호	종 전 토 지			권리 면적	환 자 토 지			층 평 면적	청 신 금 체 납 액	남 부 자 주 소, 성 명
	동	명	번		동	명	지 번	평 수		
1106	자양동	125-26		47	자양동	654-15	49	2.0	480,000	구의동 55-11 이재달
1233	"	139-5		178.2	"	663-20	187.3	9.1	2,912,000	서교동 379-10 이철희
1236	"	132-2의2		62	"	664-4	62.9	0.9	261,000	자양동 125-9 김대수
1248	"	80-12		42.6	"	665-12	46.7	4.1	1,230,000	자양동 101-2 이갑신
1250	"	80-1		45.7	"	665-15	69.7	24	6,400,000	충신동 13-6 정경덕
1259	"	82-1		35.5	"	665-9	36.1	0.6	174,000	자양동 82-1 장영숙
1274	"	87-6		52	"	667-7	52.2	0.2	56,000	자양동 87-6 김양애
1286	"	산37-1		101	"	671-7	101.8	0.8	176,000	성남북성동 575 구자영
1289	"	산26-3		53.8	"	672-1	54.7	0.9	189,000	구산동 23-20 연원영
1308	"	141-5		38.1	"	679-16	41.3	3.0	1,500,000	구의동 222-41 김재철
1372	"	138-1		40.3	"	681-28	48.4	6.1	2,106,000	잠실동 150 손덕용
1379	"	29-18		26.8	"	681-40	34.6	7.8	1,872,000	장위동 168-303 이병도
1390	"	27-5		50.9	"	682-12	52.5	1.6	560,000	자양동 신봉희
1420	"	산10-34		40.6	"	683-21	41.2	0.6	210,000	화학동 429 서정철
1428	"	22-40		41.1	"	684-4	46.2	5.1	1,734,000	자양동 22-40 최동운
1444	"	29-10		65.4	"	685-3	66.5	1.1	330,000	구이동 243-5 박종서
1518	"	40-26		27.6	"	690-24	30.2	2.6	728,000	충무로 2 가 50-10 양명노
1543	"	66-9		33	"	690-67	33.3	0.3	93,000	자양동 66-9 심정숙
1590	구의동	72-3의1		41.2	구의동	587-27	61.1	19.9	3,383,000	구이동 210-59 이동순

1618	구의동	322-1		100	구의동	591-5	103.1	3.1	1,116,000	구이동 322-1 박남선	
858	자양동	398-1		41	자양동	640-1	41.9	0.9	288,000	휘경동 167-52 황의중	
871	"	103-209-1		41.4	"	640-26	42.5	1.1	352,000	용달동 10-2 조용선	
895	"	산58-4		105.5	"	645-3	105.6	0.1	28,000	중인동 70-4 이귀호	
899	"	산58-10		87	"	615-5	90.9	3.9	975,000	자양동 산 15-43 엄익순	
909	"	산45-46		52	"	646-10	53.2	1.2	408,000	태드동 1-1 최상호	
970	"	107-18		36	"	649-17	36.3	0.3	99,000	중곡동 94-33 윤용학	
983	"	산49-20		39	"	650-10	39.8	0.8	232,000	장충동 1 가 49-131 김대순	
998	"	산48-5		48	"	650-29	48.4	0.4	144,000	이문동 73-18 김재중	
1001	"	산48-2		48	"	650-33	48.1	0.1	36,000	동암동 2-46 김신현	
1015	"	106-0		31	"	651-11	31.7	0.7	217,000	자양동 106 최명복	
1020	"	111-0		45	"	651-20	47.6	2.6	1,040,000	번동 410-4 임원규	
1036	"	산49-1		39.6	"	651-40	41.6	2.0	600,000	동암동 419-107 김홍기	
1090	"	126-1		44	"	653-38	44.7	0.7	252,000	수유동 1-44 금정복	
777	"	116-5		36.5	"	635-17	37.6	1.1	363,000	행당 16-4 한영호	
822	"	122-45		35	"	638-13	35.3	0.3	93,000	자양 331-12 이준덕	
844	"	368-9		46	"	639-12	46.3	0.3	99,000	단지 405-8 지영일	
856	"	103-29-24		46.6	"	639-35	48.2	1.6	464,000	연남 223-89 김기영	
1664	구	의	산60-7	106.3	구	의	593-9	109.4	3.1	1,116,000	수유 524-35 박일영
1673	"	304-5		76.7	"	594	77.7	0.7	294,000	신단 286-68 지용규	

제 823 호

서

부

1981.2.7

36-2

3.6-30 제 823 호 시

보 1991.2.7

① 서울특별시공고제 35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승인공고

1. 건설부고시제 214호(78.8.2) 및
서울특별시 고시제 290호(79.6.29)
로 시설결정고시 및 변경결정고시된
합정동 로타리 - 제 2 한강교간 도로 확
장사업 구간내에 지속 편입되는 토
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농법

제 25조의 2 규정에 의거 공고일
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표
시킵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건설관리과
에 배치하고 보지 및 건물소유자
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가. 공고장소: 마포구청

나. 공고기간: 1991.2.12~1991.
2,25 (14일간)

1991.2.

서울특별시장

합정동로타리~제 2.한강교북측간도로확장공사 합정동(토기)

번호	지번	지목	지적	등급	소유자		비고
					주소	소지명	
1	380-9	대	114.11	78	합정동 380-11	정갑례	
2	380-15	"	130.9	80	동충동 25-1	이교웅	
3	381-14	"	67.8	80	상왕십리동 710-14	이상보	
4	381-13	"	46.9	80	합정동 274	정수남	
	380-7	"	204.3	78	" 380-6	김범진	
	381-12	"	22.5	80	" 274	정수남	
	381-10	"	175.2	80	" 381-7	김선준	
	381-9	"	126	80	"	"	
9	381-2	"	628	82	"	"	
10	380-55	"	98.4	78	" 380-11	정갑례	
11	380-56	"	712.3	78	" 380-39	허현락	
12	381-76	"	321.7	78	" 381-17	김덕준	
13	381-77	"	262.1	80	화곡동 353-1 호	전용재	
14	381-78	"	114.3	78	합정동 381-21	김봉렬	
15	381-79	"	114.2	78	" "	"	

제 823 호 시 보 1981.2.7 36-31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	등급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6	381-80	대	57.2	72	한정동 381-11	조종덕	
17	381-81	"	167.9	75	"	"	
18	374-12	"	232.2	82	한정동 376-10	이태룡	
19	373-39	"	282.8	82	한정동 373-19	김충현	
20	373-38	"	103.5	82	수유동 238-3	박경희	
21	373-37	"	58.3	82	수유동 240-3	박경희	
22	373-35	"	30.7	82	한정동 373-20	전준자	
23	373-36	"	12.3	76	이태원동 271	김남신	
24	381-67	"	80.1	80	한정동 373-20	전준화 회2인	
					서울시		

한정로타리~제 2 한강교간 도로확장공사

한정동(건물)

번호	지 번	구 조	지적정수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	380-11	철근조립우개	1 층 29.3 2 층 29.3 3 층 29.3 지하 29.3	한정동 380-11	정갑례	
2	380-1	철근조립우개	1 층 78 지하 2	한정동 380-39	최창락	
3	380-17	철근콘크리트 우개	1 층 69.93 2 층 67.36 3 층 67.33 지하 69.28	한정동 381-17	김덕순	
4	381-21	연화조평우개	지하 7.4 1 층 32.87 2 층 20.25	한정동 381-21	김봉필	

-32 제 823 호 시

보 1981.2.7

번호	지 번	구 조	지 측 평 수	소유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5	381-11 -61	연화조(물지) 세 앤 부 넥 조 스레트줄(창고) 연화조평 옥개	6.2 3.77 1 층 42 2 층 42 지 하 3.1	합정동 381-21 " " 381-11	김봉필 " 조종덕	
6	381-2	목 조 초 습 연화조평 옥개	8 1 층 29.31 2 층 22-15 3 층 5.21 지 하 8.99	합정동 381-2 " "	임선순 "	
7	374-1	철근콘크리트 평 옥 개	1 층 70.2 2 층 70.2 3 층 70.2 지 하 25	하적동 375-1 " "	한정시장 주식회사	
8	373-16 -25 -26 -27	"	1 층 17 2 층 17 3 층 17 지 하 5 옥탑 2.67	수유동 248-8 합정동 373-20	박경희 전춘화	
9	373-17	"	1 층 89.91 2 층 89.91 3 층 89.91 4 층 13.5 옥탑 0.86	합정동 373-17	김충현	
10	373-16 -25 -26 -27	"	1 층 17 2 층 17 3 층 17 지 하 5 옥탑 2.67	이태원동 271	김남진	

제 823 호 시

보 1981.2.7 35-33

번호	지 번	구 조	지 속 평수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설 명	
11	373-17	세멘부리조스레트 루조와습 철근콘크리트 평	23.61 20 12 1층 31.3 2층 31.3 3층 31.3 4층 18.54 지하 4.29	합정동 481-28 합정동 381-2 수유동 283-3	조종화 임선순 박경희	
12	381-2					
13	373-20	목조와습 철근콘크리트 목 개				

④ 동대문공고제 35호

지적공부 복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낭봉동 346-7 브지에 대한 지적공부(토지대장)을
복구하고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다 음

동명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등기상	비고
				주 소	설 명		
상봉	346-7	도로	139 평		미 등기	미 등기	

1. 공시기간 : 81.2.4--81.2.18.

(15 일간)

2. 공시문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재무과 관내 각동사무소

3. 지적공부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재무과

4. 주의사항

가. 지적공부 복구내용에 차오가
있을 때에는 소점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신청 바랍니다

나. 공시기간동안 이의가 없을 때는

공시기간 경과후에는 공시내용과
같이 확정됨

다. 기타 상세한 것은 동대문구청

재무과에 문의 바랍니다.

동 대 문 구 청 장

36-34 제823호 시

보 1981.2.7

◎ 영동포구공고제 49호

1. 1981.1.31.16:00 영동포구 대
립 제3동장 직인을 분실하였기
서 특별시 공인조례 제6조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포함.
가. 분실 직인은 1981.1.31.16:00
이후 직인 날인은 무효
나. 신조 직인은 1981.2.2.09:00부
터 사용 개시

1981. 2. 2.

서울특별시장

공인의인영

인



명

공인명

대립 제3동장 직인

사령

◎ 1981.2.4

북부위생처리장 이 용 구
지방화공기원

복직을 명함.

2호봉을 급함.

북부위생처리장 근무를 명함.

강동구보건소 박정의
지방행정주사

중기관리사업소

서울특별시장

◎ 1981. 2. 7

동대문구화기동 전재승
지방행정서기보

대구시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장

제 823 호 시

보 1981.2.7 36-35

◎ 1981.2.15

◎ 1981.2.5

대구사동구 김태수
지방행정주사보

종로구동인1동 김동균
지방행정서기보

서울특별시 진입을 명함.

내무부 천출을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별지 제2호서식)

출석통지서

인적	성명	서 경재	소속	보사국 청소년과		
			직급	지방행정 주사보		
사	본 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편저동 101번지				
항	주 소	· 은평구 증산동 171-1				
출석 이유		인사위원회 진술				
출석 일시		81년 2월 19일 15시 00분				
출석 장소		소회의실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 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81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위원장 (④) 귀하				

정 정

시보 제819호 6.81.1.13자) 훈령 위임전결 규정 중 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이 정정 한다.

1981. 2

서울특별시장

위 일 전 결 규 정

페이지	출	오	정
20	위에서 6제	15. 마약법 제17조	15. 마약법 제7조
25	밑에서 3제	37. 생산원보제출	37. 생산월보제출
32	위에서 4제 위에서 6제 밑에서 11제	2. 3,000㎥ 미만 .. 3. 3,000㎥ 미만 .. 이상재의	2. 3,000㎥ 이상 .. 3. 3,000㎥ 이상 .. 이상일지심의 재의
34	맨 끝	29. 수협면허증교부	29. 수협면허장 교부
39	밑에서 4제	26. 구지점용 허가	26. 구거점용허가
46	위서에 7제	다. 1전당 5,000만원이상	다. 1전당 5,000만원 미만
56	맨 위	마.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전결권자 누락	전결권자 국장
57	밑에서 7제 맨 끝	가. 학교부지 및 아파트 전용지구 전결권자누락 다. ... 1,650㎥이상	전결권자 국장 다. ... 1,650㎥ 미만
59	밑에서 4제	나. 운수과	나. 운수과
65	위에서 11제	가. 허가및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